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5/ 10 통권 162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부부싸움은 '프레임'의 충돌 탓(?)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엑셀로 합계잔액자산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동 작성하기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 드립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지자체에 건물 등 기부채납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기부채납 근거법령에 의한 기부채납가액으로 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사업소득 납세자의 예상외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

개념, 구분	소득과 비용 상황, 적용세율, 세금효과, 향후 대응방안들
① 여러 소득	주요 사업활동 이외 다른 소득 가능성(기타소득, 전 직장 근로소득, 복수근무소득 등)
② 예상외 소득	축적된 예금, 투자상품에 따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산(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기준 초과액 등)
③ 퇴직·양도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연도 중에 발생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별도 신고(종합소득합산아님)
④ 재무제표	사업소득의 총매출, 대응매입원가, 인건비, 간접비, 각종비용 대응, 자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의무
⑤ 적격증빙	외부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비용만 대응
⑥ 가사비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상 비용만 대응비용으로 하며, 개인카드의 가사비용은 절대 제외
⑦ 국세청 분석	모든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세금상황이 국세청 정보망(TIS)에 통합 분석 후 안내 통지문
⑧ 누진세율	다단계누진세율(6%-45%, 7단계)로 소득증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세율 적용
⑨ 세금감도	소득증가와 세금증가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체증비례관계임. 과세소득이 1200만원까지면 72만원이지만, 2배인 2400만원이면 72 + 1200 × 15% = 252만원으로 3.5배 포물선(∩)을 이룸
⑩ 변경불가	종합소득은 전년 12.31.까지 확정된 소득·비용상황에 근거하므로 예상외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줄이거나 분산이 불가능하며, 이를 거울삼아 올해에 합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22호 / 주간 19호

2023. 05. 10.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일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사업소득 납세자의 예상외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	표지
긴급시사해설	엑셀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동 작성하기	2
CEO에세이	부부싸움은 '프레임'의 충돌 탓(?)	3
세무·회계 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고문 위로금 - 하도급 위반 매출대금 지연 이자 - 세금계산서 발행2건 -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 지입차 유류비 정산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제도 -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9 10
직장인 Surviva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네번째	12
최신 판례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1348, 2022.05.24) -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736, 2022.08.22)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 31일까지 마쳐야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지자체에 건물 등 기부채납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근거법령에 의한 기부채납가액으로 함	16
세무정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 드립니다	15 30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8

엑셀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동 작성하기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합계잔액시산표(1년)		
잔액금액	계정과목	잔액금액
10	①현금예금	
20	②매출채권	
30	③재고자산	
25	④투자자산	
35	⑤고정자산	
15	⑥무형자산	
	⑦매입채무	15
	⑧단기차입	20
	⑨장기차입	30
	⑩충당금 등	10
	⑪자본금 등	20
	⑫잉여금 등	25
	⑬국내매출	80
	⑭해외수출	75
	⑮영업외수입	15
	기타수입	10
110	매출원가	
30	판매관리비	
15	영업외비용	
6	기타비용	
4	⑳법인세 비용	
300	합계	300

재무상태표(12.31.)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①현금예금	10	⑦매입채무	15
②매출채권	20	⑧단기차입	20
③재고자산	30	유동부채	35
유동자산	60	⑨장기차입	30
④투자자산	25	⑩충당금 등	10
⑤고정자산	35	비유동부채	40
⑥무형자산	15	⑪자본금 등	20
비유동자산	75	⑫잉여금 등	25
자산합계	135	당기순익	15
		자기자본	60
		부채+자본	135
⑬ 손익계산서(1.1.~12.31.)			
매출원가	110	⑬국내매출	80
⑱ 매출총이익	45	⑭해외수출	75
판매관리비	30	매출합계	155
영업이익	15	⑮영업외수입	15
영업외비용	15	기타수입	10
기타비용	6	⑰법인세 비용	4
법인세전이익	19	당기순익	15
⑳법인세 비용	4	비용합계	180
당기순익	15	수익합계	180

부부싸움은 '프레임'의 충돌 탓(?)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청소를 평생 해왔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표정이 늘 밝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냐고. 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환경미화원은 왜 행복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레임'의 저자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 부부싸움도 결국 프레임의 충돌사건이다. '가족'은 아내에게 있어 자기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다. 그러나 장남인 남편에게는 그의 부모형제와 처자식이다. 그래서 누구와도 바깥스를 즐기지 못하곤 한다. 가족을 보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상대의 프레임을 인정한 후 양보하고 절대 겸손해야 한다. 절대 겸손은 스스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므로 부부는 바로 '화성과 금성으로부터 온 사람들'처럼 소통이 힘들다.

보수·진보의 갈등, 영·호남의 갈등도 이와 비슷하다. TV토론에서처럼 자기만 옳다고 악착같이 우기는 소위 지식인(?)들을 보면 한 대씩 쥐어박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럴싸한 이념을 빙자해서 먹이를 한 줌이라도 더 먹겠다는 승냥이들의 싸움같기 때문이다. 그것조차 대체로 이해 당사자들은 뒤에 숨어있고 말꾼들만의 다툼이어서다. 그래서 더 한심스럽다. 승산 스님의 지적처럼 "학문만 가지고서는 은행에서 돈 만지는 격"이다. 또 "남의 학설을 가지고 와서 왈가왈부한다. 그래서 세상이 좌·우로 갈라져서 싸울 뿐"이다.

유가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다. 수신은 수심(修心)에서 오고 수심은 대자연과 조화에서 온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쪽에서는 평화지상주의 때문에 퍼주었다고 상대를 비난한다. 또다른 쪽에서는 수구냉전 사고로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입에 침을 튀긴다. 사실 한

반도는 유례없이 강대한 4대 강국 사이에 있다.

그래서 중첩된 프레임에 대한 명찰이 있어야 한다.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을 슬기롭게 떠나가야 한다. 사실 광복은 자주독립으로 얻은 게 아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한국사회 스스로 튼튼하고 건전해져야 한다. 건전해지려면 청결이 우선이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비자금, X파일, 성상납, 대기업 CEO의 부당세습같은 부패가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의 지도'를 인정하면서 논쟁보다는 '관계의 보완'에 힘써야 한다. 미국 미시간대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지적이다.

"서양은 개인의 자율성, 동양은 인간관계를 존중한다." 동양에서는 짝 막힌 법치보다 애매한 덕치(德治)가 한수 위라고 생각한다. 음양의 원리, 즉 '서로 반대면서 동시에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힘'의 관계를 믿는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보수 연 후에 진보다. 좌우가 따로 없다.

기업을 보는 생각도 급변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탈도 정상화됐다. 자본과 노동을 대립가치로 보기도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기도 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금융자본주의가 만개했다. 공산주의는 붕괴했다. 자본주의의 승리인 듯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 월가의 카지노 자본주의 역시 위기를 맞았다. 미국은 거대기업 상당수를 국유화하고 있다.

좌우 이념구분을 무색하게 하는 21세기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고경영자인 CEO의 역할과 시대적 임무다. CEO는 중도다. 자본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노동편만 들어서도 안된다.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을 가진 CEO만이 생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경영자 자본주의(CEO Capitalism), 혹은 경영자주의(CEOism) 세상이 아닌가 싶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28일 (금)	5월 2일 (화)	5월 3일 (수)
미 달 러 (USD)	1339.90	1339.10	1340.20
일 본 엔 (JPY)	1000.63	974.00	982.34
영 국 파 운 드 (GBP)	1674.41	1672.54	1671.90
캐 나 다 달 러 (CAD)	985.51	988.45	983.74
홍 콩 달 러 (HKD)	170.70	170.59	170.73
중 국 원 (CNH)	193.37	193.44	192.72
유 로 화 (EUR)	1477.64	1469.33	1475.56
호 주 달 러 (AUD)	887.95	887.76	893.38
싱 가 폴 달 러 (SGD)	1003.56	1002.06	1004.3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00.22	300.21	300.22

고문 위로금

Q 당사의 임원이 퇴사후,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신상의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의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A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위로금도 지급받는다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귀사가 원천징수후 지급하시면 되며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위반 매출대금 지연 이자

Q 하도급 조사로 인해서 고객으로부터 매출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급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하도급조사 대상은 2021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대략 32백만원이고 이를 영업외손익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절한 계정이 있는지요?

혹시나 USGAAP 회계처리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A 매출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수령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2건

Q 세금계산서를 당월1일~31일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차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있는데 (1달치 거래)

이부분을 당월 1일~15일까지 발생분에 대해서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울러 16일~31일까지 분은 정상적으로 차월에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럴경우 당월에는 지난달 한달치 + 15일분 에 대한 계산서 즉 2건이 발행이 되는것으로 되겠네요.

A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15일의 기간동안만 합산하여 1일~15일분은 15일에 16일~30일분은 3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사용 문의

Q 본 원에서 처리하는 택시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비의 경우는 통상 사전승인을받은 후 교통비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사전승인이 어렵고, 업무관련 출장이 아닌 귀가의 목적일 경우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를 꼭 교통비로만 처리해야맞는것인지 아니면, 위와같은 사유로 복리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지의 여부는 위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되므로,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비교통비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지입차 유류비 정산

Q 당사는 외부 지입차량과 계약을 체결하여, 월발생되는 지입료와 실제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제비용(식대, 통행료)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행거리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유류비를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 유류비 지원액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지입차량과 계약 체결하여 유류비 포함한 총 발생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받기로 계약했다면 유류비도 포함시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3년 5월31일까지 2022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① 2022년도 중에 폐업하였다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근로소득자가 202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 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하여야 한다.
- ④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를 하였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빼트리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2022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되는 경우라도 2023년 5월 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2022년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23년 5월 신고 때까지는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자

연말정산 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또는 작년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먹기 쉬운 공제항목은 미취학 자녀의 정규학원비와 정치자금 기부금,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인적공제(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합산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제도

개정 전 요건	현행 요건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할 것	삭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삭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미만 증액할 것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미만 증액할 것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은 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것	상생임대차계약은 21년 12월 20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것

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내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세율	22%(주민세 포함),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신고·납부기간	연 1회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다음해 5월 한 달간 자진신고·납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별 0.022%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24) * 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 등 4개분야 43개 기술 지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투자(%)</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td> <td>5</td> <td>10</td> <td rowspan="2">3</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td> <td>12</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8</td> <td>8</td> <td>16</td> <td>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 28의4) 																						



종합부동산세 세율

	1주택, 2주택(비조정지역)	2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3억 이하	0.6%	1.2%
3억~6억	0.8%	1.6%
6억~12억	1.2%	2.2%
12억~50억	1.6%	3.6%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4

이해할 때까지 말하라

오랫동안 영어를 사용하면 결국 혼란과 오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같은 생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영어 원어민은 당신이 한 번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면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당신의 두뇌가 실용적이 되도록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래에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비원어민들에게 어려운 일인데, 실수를 한 후에 계속 말하는 것이 벽차게(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최신 판례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1348, 2022.05.24

질 의

- (질의1) 신청법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외국법인A에게 무상으로 제공 시 비거주자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갑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내국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A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 을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하는 것임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 §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함

서면법규재산-3353, 2022.10.06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제공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0.2월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쟁점1)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도정법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소규모재건축사업등*”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인 소득령 166⑤(1)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소규모재건축사업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소득령 155②)
- (쟁점2)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

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본 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71, 2022.05.20

Marketing Tax consulting

지자체에 건물 등 기부채납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근거법령에 의한 기부채납가액으로 함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736, 2022.08.22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

【 질 의 】

-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한 세대에서 종전주택(A)이 소득법 88(9)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소득법 89①(4)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남은 B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의 기산일

【 회 신 】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31일까지 마쳐야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발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특별재난지역고령자 신청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1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며,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

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보다 31명 늘어난 241명으로 운영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장려금 대상에 먼저 전화해 장려금 대리 신청을 돕는다.

대상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발 특별재난지역 주민 14만 가구다.

고령자장애인 등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현재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맞춤형 '세금 상식' 배포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서 간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담겼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했던 중언부언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이 수록됐다.

국세청이 이같은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중산층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속세, 증여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공신력 있는 자료도 적어 유튜브 등 단편적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했던 것과 있어 국세청이 직접 나서 올바른 내용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 국세청 · 2023. 5

- (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빠)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 '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1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 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지만 운영)
 - * ①5.1.~5.30. 매일 06:00 ~ 다음날 01:00, ②5. 31.(신고 종료일) 06:00 ~ 24:00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2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였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 (모두채움 대상 확대)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①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②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손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안내문 발송)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1.(월)부터 5.5.(금)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 5. 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URL(모바일)·QR코드(서면)로 안내문에 제공하여 별도 검색 없이 영상 확인 가능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 (접근경로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 ①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②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③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오류 사전예방) ①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②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 * 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만 인식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 (모바일 안내 확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화면 개선)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구성하여 화면을 아래위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발송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 * 카카오톡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링크(ARS·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 (추진배경)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3. 6. 30.(금) → '23. 8. 31.(목)
 -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든지 납부 가능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대 상	요 건(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수출기업	· ①'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②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산불피해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 [손택스]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4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1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 구성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 신고안내유형 · 기장의무 · 납부기한 연장 여부	· 개인별 유의 사항 · 업종별 유의 사항 · 동일 사업자 평균 소득률(업종·수입 금액·지역)	· 사업장별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 항목 ·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국내 주택보유내역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 (신고개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1.~5.31.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간도 5.1.~6.30.으로 동일합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과 납부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 시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

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①5.1.~30.은 오전 1시까지, ②5.31.은 오후 24시까지)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또,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치단체 신고창구(주소지 무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 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②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③ 위택스 이동
-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 (납세편의)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및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비서(구뎌)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민간 앱 14종 활용 :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 스타뱅킹·신한플레이하하·원큐우리·WON뱅킹 등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

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화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 ⑤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⑥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 ⑦ 해당 과세연도 중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6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⑧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약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화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부칙 <대통령령 제32105호, 2021. 1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참고 2 -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¹⁾, 고정자산매각액²⁾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주업종1)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	--------------------	---	---

1)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2)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소득세과-729, 2019.5.23.)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

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0.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2.5억(5억×7.5/15)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3억+도매환산 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7.5억) 이상 * 제조 5.5억+제조환산 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0억+도매환산 6억(2억×15/5)]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 준금액(제조 7.5억) 이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 장으로 보아 판단

✓ 관련 최신 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4.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건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규속부타)

6.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8.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불가한 것입니다.

9.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

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13.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6.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 드립니다

- 국세청, 2023. 5

-
- (제작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1 제작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모두채움·미리채움, 납세자 유형별 신고도움자료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산분야에 대해서도 「주택과 세금(‘21년3월)」 책자,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22년)」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수 부유층만 납부한다는 인식 때문에 납세자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어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가 적어 국민은 유튜브 등 단편적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도 공유·확산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장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제 보편적 세금이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납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누적됐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이번 자료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답답함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 또한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소수 부유층이 아닌 일반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제·아이템을 엄선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며, 납세자가 납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특히, 평소에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상속세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서민·중산층일수록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상속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의 개념·부과 대상·신고납부방법·결제방법 등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 최근 상속세 질의의 상당수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주택 상속으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책자,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명백한 탈세를 결제방법으로 소개하여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 현재는 관련 문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통해 문의가 특히 많았던 사항을 선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된 법조문, 판례, 예규(법령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풍부히 수록하여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SNS)에 카드뉴스 형태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추후 홍보물, 유튜브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업무방향

- 「상속·증여 세금 상식」은 애초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나, 예기치 않게 납부 대상이 되어 걱정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향후 서면질의 및 국세 상담 내용을 보아가며 국민이 더 알고 싶은 상속증여세 관련 주

제가 누적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공유된다면 비정기적인 후속 연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1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Q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Q3과 Q5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Q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 Q1에서 알려 드린대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공제금액 10억원 ~ 3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배우자만 있을 때 : 공제금액 7억원 ~ 32억원
기본 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자녀만 있을 때 : 공제금액 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 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Q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쉽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00억원이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아파트가 거래된 가격으로



말하고, 누군가는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말할 것입니다.

-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재산 중에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평가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것

●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어진 거래만 봅니다.
- 매매·경매 외에도 감정,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으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

-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
-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아파트·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Q5.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 Q3에서 본 것처럼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 법정상속지분 :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 가산(예: 배우자와 자녀2명, 1.5:1:1)

- ▶ (예시) 아파트 가격 15억원(그 외 상속재산 없음), 상속인 : 배우자, 자녀
 -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시 : 10억원 공제(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시 : 14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Min(15억원 ×60%, 15억원))]

Q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결정하고, 집안사정상 제가 그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sum_{n=1}^5 \frac{(\text{부동산가액} \times \text{년} 2\%)}{(1+0.1)^n}$$

무상 거주한 기간 동안 위 식으로 계산한 임대료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과세하고, 만약 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주기로 계산

-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7.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저는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요건에 맞으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액이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 요건①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군복무 외에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산 경우도 가능

-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기간도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

- 이사, 분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함. 이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포함됨

- **요건②**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이 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8.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증부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계속 1주택자였고 종합부동산세(증부세)를 낸 적도 없어 증부세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1채를 갑자기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증부세를 내야 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증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증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증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증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됩니다.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함
자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을 참조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받은 부분의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인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 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저는 2주택이 필요가 없어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생각한다면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되고, 7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 ②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 밖에 안됐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상속 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4. 1일 사망시 신고기한은 10 31일, 4.28일 사망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일

- 온라인 신고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할 때 내야하는 금액은 총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총 세금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총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총액의 50%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을 매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국세청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가 가산됩니다.

● 분납 예시 (총액 4천만원. '23. 4. 1일 사망, '23.10.31일에 신고)
'23.10.31일에 신고하면서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12.31.일까지 잔여 세금 납부

● 연부연납 예시 [총액 6천만원. '23. 4. 1일 사망, 5년 선택]
'23. 10. 31일에 신고하면서 1천만원을 납부하고, '24년~ '28년 동안 매년 10.31일까지 1천만원+ 이자 납부

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팩트체크**

-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서면4팀-1036,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미디어 내용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구분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인	과세여부
CASE1	아버지	자녀	상속세 ◦
CASE2	자녀	자녀	상속세 ×

● 팩트체크



-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재산세과-256 (2010.04.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80 (2017.07.25.)

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쟁점 금원으로 2011. 10. 25. 원고가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쟁점 보험의 보험납입금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0. 25. 심○○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심사상속2013-0004 (2013.05.21)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보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보험1, ○○보험2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며, ○○보험3, ○○보험4, ○○보험5, ○○보험의 계약자, 만기수익자, 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중략)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임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미디어 내용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함.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팩트체크

-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①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심사증여2001-0105(2001.11.30.)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함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미디어 내용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 팩트체크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

-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 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 조심2008서0806 (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함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미디어 내용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 팩트체크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재산세과-4168 (2003.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보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07.1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